

1. 개정이유

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하여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(안 제8조)

나. 자율점검결과서(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 포함)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,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, 0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요양·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요양·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요양급여비용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제4조”를 “「요양급여비용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제4조의 2제3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”을 “자율점검결과서(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)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출한”을 “제출하거나,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 제2호의 요건 중 “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”의 여부는 제7조제1항의 제출내역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심사결과 통보) ① 심사평가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 확인 결과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「<u>요양급여비용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</u>」 제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9조(사후관리) ① (생략)</p> <p>제10조(제외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.</p> <p>1. 제5조에 따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후 <u>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</u></p> <p>2.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·변조 자료 등</p>	<p>제8조(심사결과 통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요양급여비용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</u>」 제4조의 2제3항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사후관리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제10조(제외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자율점검결과서(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)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</u> ----</p> <p>2. ----- -----</p>

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

3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----- 제출하거나, 신
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

3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 제2호의 요건 중 “신
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
자”의 여부는 제7조제1항의 제
출내역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
고려하여 판단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